

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
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
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임병운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11월 14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6일

3. 제안이유

이 조례의 기술상 오류를 바로잡고,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기술상 오류를 바로잡고,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함(안 제2조부터 안 제5조)

나. 별지 서식의 기술상 오류와 용어 등을 정비하여 전문개정함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○ 이 조례에 기술상 잘못된 표현과,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 정비 소요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

- 안 제2조는 잘못된 표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체가 ‘도지사’ 이기 때문에 문맥에 맞게 ‘도지사이라 한다’ 에서 ‘도지사라 한다’ 로 어절을 바로잡음
- 안 제4조의 홑낫표(「 」) 내 띄어쓰기를 정비함
-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사용된 ‘별지 제○호서식’ 은 복수의 별지 내용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 조례에는 별지 서식이 단수(1개)이므로 이를 바로잡고,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‘별지 서식’ 으로 개정함(부가적으로 별지 서식도 전문개정함)
- 조례의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고,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
다. 종합의견

- 이 조례안은 조례에 기술된 잘못된 표현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,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